

해외석유정보

본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협회 홈페이지(www.oil.or.kr)에서 연재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 편집자 주 -

日, 제품수요의 구조변화와 가격조정 필요

예측하기 어려운 수요구조

일본의 연료유 소비가 2003년에는 전년실적을 상회했다. 당초에 종합자원에너지조사회의 석유제품수요 전망검토위원회가 지난 봄 전망한 2003년~2007년도의 5개년 소비전망에서는 2003년도에는 2.3% 감소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예상과는 반대로 전년보다 2.2% 상회할 것으로 나타났다. 즐거운 오산이지만 이는 원자력발전소 고장에 따른 전력용 중유의 증가와 추운 날씨 때문에 지난해 1~3월의 등유수요 증가라는 일시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다. 2004년도 이후 5개년 소비전망작업은 수요전망검토위가 이미 착

수했으며 3월말에는 마무리할 예정이다.

2003년의 연료유소비는 예상과는 달리 증가하였으며 중유의 비중이 상승했다. 이것이 일과성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제품소비에 구조변화를 가져온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주요 유종의 증가율은 휘발유가 0.9%, 등유 1.5%, 경유 3.8%, 병커A유 1.0%, 병커B·C유 18.0%이다. 발전용 대체수요가 발생한 병커C유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수요전망검토위가 지난해 봄에 전망한 2003년 전망에서는 휘발유는 0.9% 증가로 변하지 않았지만 등유는 ▲3.0%, 경유는 ▲2.9%, 병커A유는 ▲1.2%, 병커B·C유는 ▲13.0%였다. 특히 발전용 병커C유는 ▲30.0%라는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표 1〉 2003년의 석유제품 소비증감율 및 전망

(단위 : %)

	휘발유	등 유	경 유	병커A유	병커 B·C유
실 적	0.9%	1.5%	3.8%	1.0%	18.0%
과거 전망치	0.9%	▲3.0%	▲2.9%	▲1.2%	▲13.0%

그러나 원자력발전 등 비석유계 연료발전의 가동을 전제로 한 이번 전망은 크게 빛나가고 말았다. 2003년

준계의 전망에서는 발전용 벅커B·C수요는 2004년도에는 ▲31.1%, 2005년에는 ▲16.6%, 2006년도에는 ▲11.2%, 2007년에도 ▲4.7%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계획대로 원자력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2004년 준계의 새로운 전망에서는 중유수요는 재수정되지는 않을까? 적어도 일정기한을 석유화력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전력공급면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유수요의 장기 감소기조에 변화는 없고 석유산업으로서는 경질유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등유수요가 2003년도에 예상외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1~3월이 추위 석유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등유수요는 겨울철 기온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만 난방용 분야는 장기적으로는 전력·가스의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부터의 공방이 주목된다. 지난 봄의 5개년 전망에서는 등유소비는 2004년 ▲1.1%였고 2005년 ▲0.8%, 2006년 ▲0.4%, 2007년도 ▲2.6%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경유배기가스 규제의 강화에 따라 휘발유차 등으로의 이동이 진행되어 자동차용 연료의 경유 이탈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소비가 유일하게 계속 증가해왔던 휘발유로의 기대는 크다. 그렇지만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휘발유 수요에도 변화의 기운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경계를 늦출 수 없다.

휘발유 수요의 변화

휘발유 소비는 현재까지 견실히 증가해 오고, 2003년에는 0.9% 증가한 6,013.4만kl로 사상최초로 6,000만kl대를 기록했다. 하지만 연도기준으로 증가율이 1%대가 무너진 것은 1985년 이후 2001년과 2003년뿐이며 거의 매년 2%를 넘었다. 그러나 2003년에는 월간기준으로는 4회나 전년실적을 하회하였다. 4월에는 전년동월 대비 ▲0.9% 감소, 7월 ▲4.5% 감소, 8월 ▲3.5% 감소, 11월 ▲0.4% 감소했다. 7~8

월에 크게 감소한 것은 서늘한 여름과 전국적으로 비와 흐린 날이 많아 드라이빙 시즌 특수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휘발유자동차 보유대수는 계속 1%정도 증가하고 있으나 신차등록대수는 4월이 ▲7.2%, 7월 0.1% 증가, 8월 ▲6.2%, 11월 ▲8.5%로 감소하고 있다. 그 이외의 월은 비교적 순조로웠기 때문에 연간으로는 수요가 소폭 상승하였으나, 휘발유 수요가 이대로 순조롭게 증가할 것인지는 낙관할 수 없다.

연료전지차 등 휘발유차를 대체하는 신에너지자동차가 보급되는 것은 아직 이르다 하겠다. 다만 휘발유 소비량이 적은 소형차가 늘고 연비가 뛰어난 하이브리드차의 시장투입도 이루어 지고 있다. 지난 봄의 5년간 전망에서는 휘발유 소비 증가율은 2003년도의 0.9%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0.6%, 2005년도에는 0.5%, 2006년도에는 0.3% 2007년도에는 0.1%로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해마다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따라서 휘발유 소비의 성장신화에도 어쨌든 중지부가 찍힐 것으로 각오하고 있는 편이 좋다. 이번 봄의 5년간 소비전망에서 어떠한 견해가 나올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하겠다.

금년 6월에는 장기에너지수급 전망도 개정되고 석유의 새로운 위치부여가 정량적으로 보여질 예정이다. 탈석유정책의 재수정에 의해 1차에너지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을 향후에도 50%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될 듯하다. 하지만 석유수요총량이 현상황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

더욱이 2004년 여름에 취합하는 지구온난화대책 추진대강의 평가·재수정에서는 1차에너지 전체의 소비규모가 현재의 전제보다 줄어들 듯한 기미가 있다. 현재의 대책으로는 교토의정서의 약속 이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에너지절약을 최대한 추진하고 그래도 어려우면 1차에너지 소비총량을 축소하여 CO2배출량을 범위내에서 억제하는 최후의 수단이 사용될 가능성도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출산율감소 및 인구 고령화와 낮은 경제성장의 틀로는 그런 시나리오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는 1차에너지중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유지하여도 석유소비의 절대량은 감소한다. 따라서 지금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해도 휘발유수요도 결국 한계점에 도달할 것으로 간주하고, 양보다 마진확보를 목표로 시장형성에 전력을 다할 필요가 있다.

시세형성이 급선무

그렇지만 휘발유시세의 현황은 극히 심각하다. 원유가격이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소매가격이 지난 10~12월에는 오히려 하락했다. 석유원매각사는 낮은 결산 가격을 인상하려고 하지만 소비자시세의 시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현재까지의 비용회수는 그다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원매각사는 결산가격의 인상을 계열판매업자에게 통지하여 비용증가의 회수를 위해 힘껏 힘을 쏟았지만 소비자시세의 침체 때문에 난항을 겪었다.

하지만 이 대로는 심각한 사태를 맞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이 원매측에는 강하다. 판매마진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제품수요 증가에 대한 고민이 향상화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아시아 프리미엄과 OPEC의 감산결정에 의해 고유가현상이 지속될 듯하고 올해는 원유정세가 점점 복잡화되어 가격변동성이 심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과거에는 소비자가격은 원유가격이 낮아지면 그 이상으로 떨어지고 상승해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이 되풀이 되는만큼, 원유가격의 급등락은 시장 교란요인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심할 수 없다. 그래서 유럽시장과 같이 원유가격에 연동되는 소비자시세를 조속히 형성할 필요가 있다. 2004년 들어서 원매각사가 비용회수를 철저히 할 방침을 세우는 것은 이 때문이다.

지난 2월 결산가격은 민족계 원매사가 2엔정도, 외국계 원매사가 1엔미만으로 인상폭에는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 없던 강경한 자세이다. 연말을 앞두고 공

방이 격화되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원유가격연동 시세형성에 실패한다면 판매업자는 비용증가를 반영할 수 없고, 원매사도 결산가격의 회수가 어렵다. 소비자시장의 정비가 늦어진다면 원매사와 판매업자도 그만큼 위험부담이 커진다. 하지만 소비자시장의 현실은 빠듯하다. 주유소 및 정제시설도 변함없이 공급과잉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수급완화가 만성화되고 있다. OPEC과 같이 담합하여 생산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잉설비의 해소와 처리량의 축소도 자체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지금부터는 휘발유도 포함하여 석유수요규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하기 때문에 한정된 파이를 서로 나눌지 빼앗을지 석유업계로서는 어려운 선택을 해야하는 입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오일리포트 2004. 2.23)

이란 이자데간 유전의 일본과의 계약체결과 문제점

2004년 2월, 이란은 일본의 국제석유개발과 자국내 거대 유전인 아자데간 유전 일부에 대한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일본이 지난 2000년 개발권을 잃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카푸지 유전 등을 대신할 원유공급선 확보라는 측면에서 큰 성과로 볼 수 있으며 상류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BP나 Total 등과 같은 거대 국제석유회사들에게는 지금까지 이상의 자극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로얄더치셸이 이미 독점영업권에 대한 참가를 보유하고 있어 기술적·재정적 난관이 제기되고 있다.

첫 번째 난관은 이란·이라크 전쟁 당시의 잔해들이 방치되어 있는 지역에서의 작업이다. 두 번째는 생산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른 문제점이다. 현

행 조건에서는 아자데간 유전과 같이 복잡한 프로젝트의 문제점인 생산목표를 계약자가 달성하지 못할 시에는 NIOC(국영이란석유)가 무거운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세 번째는 로얄더치셀이 참가를 보류함에 따라 특별한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국제적인 전문 파트너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석유개발은 이 프로젝트의 지분 70%를 소유하고 있으며 일부는 파트너인 일본자원개발에 제공된다. 나머지는 NIOC가 동사의 스위스 자회사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 일본 측은 적어도 260억bbl의 추정매장량과 60억bbl의 가채매장량이 있다고 예상되는 4곳의 유전층으로 이루어진 아자데간 유전의 남부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란은 손해를 최소화하고 채굴량을 최대화하기 위해 유층을 동시에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으나 구조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경험이 풍부한 조업자라도 지층의 복잡성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자데간 유전의 생산량은 2007년, 5만b/d로 시작해 제1단계가 끝나는 2008년에 15만b/d, 제2단계인 2012년에는 최대 26만b/d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제2단계는 약 20억 달러를 투자하여 적어도 35기의 유정과 파이프라인, 가스처리시설, 주수설비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며 실제 개발이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정사, 지뢰제거, 최종 설계 작업을 위해 1년간의 준비단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이번 계약으로 이라크 국경에 근접한 주요 지역을 포함, 아자데간 북부지역에 대한 집중이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광구를 입수한 러시아의 루크오일이나 중국의 시노펙을 포함, 다수의 국제석유기업들이 이란의 석유가스개발에 참여하기 위해 교섭중에 있다. 특히, 루크오일은 최근 발표된 16건의 석유탐사입찰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이라크와의 국경 근접지인 아나란 유전개발의 참가승인을 NIOC로부터 취득하였다.

〈일본연료유지신문 2004. 3.3〉

日, 알코올연료 판매업자에 엄정대처기로

자원에너지청은 지난 2월 23일 키타칸토(北關東) 등의 일부 주유소에서 「알코올류·에테르류만으로 구성되고, 탄화수소유를 일절 포함하지 않으며, 품질확보법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라고 광고되는 연료가 판매되자 이에 대해 입회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미 개정품질확보법에서 판매금지 연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에 나서기로 했다.

입회검사는 경제산업성·경제산업국이 키타칸토(北關東) 및 긴끼(近畿), 쥬고꾸(中國), 큐슈(九州) 지방 등에서 알코올연료를 판매하고 있는 수십여개의 주유소에 대해 전격 실시했다.

에너지청에 따르면 채취한 시료를 분석한 결과 이미 연료에 일정량의 탄화수소유가 함유되어 있어, 개정품질확보법의 「휘발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휘발유의 강제규격에서 규제하는 알코올류와 에테르류로 한 합산소화합물의 허용규제치(에탄올에서 3%까지, 합산소화합물 전체에서 합산소올 1.3%까지)를 크게 벗어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에너지청은 자원·연료부장 명의의 공문으로 알코올연료를 판매하고 있는 주유소에 해당 연료가 개정품질확보법의 규제대상이며, 판매금지 연료에 해당하므로 연료를 판매하지 말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도매업자 등이 현란한 광고문구로 판매한다고 하여도, 연료품질을 확인·확보해 강제규격을 준수하는 것은 판매사업자의 의무」라고 못박아 「강제규격에 위반한 연료를 판매할 경우, 판매사업자가 벌칙대상이다」라고 하여 앞으로 알코올 연료의 불법판매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연료유지신문 2004. 2.24〉